

부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12
의 결 년 월 일	95. 8. 12 (제40회)

제출년월일 : 1995. 8. 4

제 출 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주 문

○ 의정활동비는 매월 350,000원으로 하며, 지급시기는 부천시공무원 보수지급일로 함(안 제2조)

2. 제안이유

1995년 7월 1일 지방자치법시행령(대통령령 제14703호)이 개정공포됨에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고자 함

부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

부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천시의회의원의회정활동비·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원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·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의정활동비) ①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과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.

② 의정활동비는 매월 350,000원으로 하고 부천시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.

제3조(회의수당) ① 회의수당은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(위원회 회의를 포함한다)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.

② 제1항에 의하여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50,000원으로 하고,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.

제4조(여비지급)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.

② 의원이 공무로 여행할시 국내여비는 별표1, 국외여비는 별표2의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.

제5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부천시공무원의 예에 의한다.

부 칙

(시행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(별표1)

국내여비지급기준표

(단위 : 원)

지 급 기준액	철 도	선 박	항 공	자동차	현 지 교통비	숙박비	식 비
구 분	운 입	운 입	운 입	운 입	(1일당)	(1야당)	(1일당)
의 장 · 부 의 장	1등급	2등급액	정액	정액	6,500	20,700	11,000
의 원	2등급	2등급액	정액	정액	6,500	16,200	10,500

비 고 : 1. 부천시의회소재지 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.

2.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,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,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.

(별표2)

국외여비지급기준표

(단위 : 미불화)

지 급 기준액	항공운임	일 비	숙박비	식 비	준 비 금		
					15일미만	15일이상 30일미만	30일이상
구 분							
의 장 · 부 의 장	1등급액	25	130	107	140	170	195
의 원	2등급액	20	114	81	130	155	180

비고 : 국외여비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의한 여비지급을 달리 할 수 있다.